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7145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김위상·김선교·신성범
정동만·고동진·이인선
김상훈·박충권·김대식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 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공개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이행 관련 기업의 공시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이 분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정보의 공시) 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시 대상인 기업과 그 밖의 기업들이 탄소중립 전환 이행실적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신 설></u></p> | <p><u>제58조의2(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정보의 공시) 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u></p> <p><u>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시 대상인 기업과 그 밖의 기업들이 탄소중립 전환 이행실적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